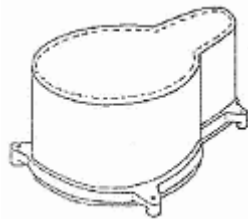


【 문제-1 】 (30점)

甲의 등록디자인 A는 물품이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으로 ‘건축물의 층을 구획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용 거푸집 안에 일정한 공간을 점유한 상태로 장착되어 그 거푸집 내부가 콘크리트로 메워지더라도 2개의 배수관이 지나갈 수 있는 관통 공간을 몸체부 내부에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乙은 甲이 디자인 A를 출원하여 등록한 이후 대상물품이 같은 디자인 B를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등록디자인 A와 등록디자인 B는 모두 오뚜기 형상을 하고 있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甲은 乙에 대하여 등록디자인 B가 甲의 디자인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침해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등록디자인 A>

<등록디자인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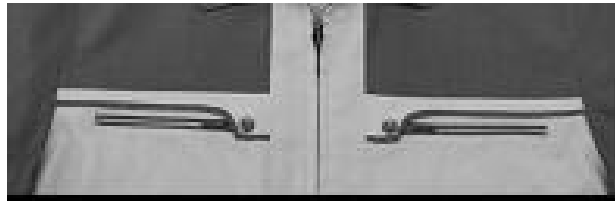


- (1) 乙은 등록디자인 A의 오뚜기 형상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형상이므로 두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비중을 낮게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등록디자인 A와 등록디자인 B가 서로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 (2) 甲은 등록디자인 B가 등록디자인 A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디자인 B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甲이 주장할 수 있는 무효사유를 논하시오. (10점)
- (3) 甲이 乙에 대하여 등록디자인 B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등록무효심결의 확정 전에 침해소송의 법원이 등록디자인 B의 등록디자인 A에 대한 침해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 취지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 문제-2 】 (20점)

甲과 乙은 모두 작업복을 제조·판매하였는데, 甲은 ‘작업복 상의’ 디자인을 등록하였다. 乙이 판매한 작업복의 상의는 甲의 등록디자인과 앞·뒷면의 몸체상부와 팔 부분은 짙은 색, 몸체하부는 밝은 색으로 배치한 점 등에서 대부분 유사하였는데, 위와 같은 특징들은 甲의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다. 그러나 甲의 등록디자인에는 ‘지퍼 형상의 가슴부위 절개선’이 있었는데(그림 참조), 이는 일반적인 작업복 앞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니었다. 乙의 작업복 상의에는 甲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모양의 ‘가슴부위 절개선’이 없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그림: 甲의 등록디자인의 가슴절개부>



- (1) 甲의 등록디자인과 乙의 실시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 (2) 한편, 甲과 乙은 모두 작업모를 제조·판매하였고, 甲은 작업모 디자인을 등록하였다. 甲과 乙의 작업모는 모두 6개의 색채가 띠 모양으로 채색되었는데, 양 디자인은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기본적인 채색 구도와 띠의 위치 및 면적이 동일하며, 단지 甲의 등록디자인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개의 조각씩 입힌 데에 반하여 乙의 디자인은 단일의 진한 감색을 입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甲과 乙의 작업모 디자인의 유사성을 논하시오. (10점)

【 문제-3 】 (30점)

甲은 디자인 A'를 창작하여 2018.10.22. 그 디자인 A' 제품 사진을 온라인 판매 업체에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甲은 2018.10.25. 디자인 A'와 동일한 디자인 A를 출원하였다. 甲은 2019.5.21. 디자인 A의 디자인 등록을 받았다. 乙은 디자인 A가 디자인 A'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甲은 디자인 A'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등록무효심판청구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乙은 디자인 B를 사용하고 있다. 이후 甲은 乙을 상대로 디자인 B가 등록디자인 A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 (1) 甲이 乙을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여 계속 중 등록디자인 A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이후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5점)
- (2) 등록디자인 A의 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디자인 A를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등록디자인 A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5점)
- (3) 등록디자인 A와 대비되는 乙의 디자인 B가, 등록디자인 A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주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또는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 등록디자인 A와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 A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설명하시오. (8점)
- (4) 乙의 디자인 B가 甲의 등록디자인 A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근거가 된 디자인 A'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이라는 주장이 허용되는지 설명하시오. (12점)

【 문제-4 】 (20점)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乙의 등록디자인 A는 출원서에 진정한 창작자인 丙대신에 丙의 아들인 출원 당시 19세 미만인 乙이 창작자로 기재되어, 출원서에 창작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등록받은 것이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 (1) 乙과 丙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가 아니고, 丙이 출원서에 창작자로 기재되지 않고 乙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인 丙으로부터 디자인 A를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등록디자인 A에 창작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8점)
- (2) 등록디자인 A가 유효하고 乙과 丙이 공동으로 등록디자인 A를 창작한 경우, 乙과 丙 사이에 등록디자인 A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설명하시오. (12점)